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61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김태년 · 복기왕 · 최민희

강준현 · 오세희 · 박범계

양부남 • 박홍근 • 모경종

박희승 • 위성곤 • 민형배

윤호중ㆍ김 현ㆍ정일영

박지원 • 권향엽 • 신영대

정준호 · 임광현 · 송기헌

백혜련 • 진선미 • 김영배

허 영 · 서영석 · 박균택

조인철 · 홍기원 · 김영진

권칠승 · 임호선 · 송재봉

김준형 • 전현희 • 최기상

김한규 · 김동아 · 정태호

허종식 • 안도걸 • 김성화

조승래 • 박지혜 • 김교흥

진성준 · 허성무 · 김성원

의원(4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관 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 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제1호 및 제2호를"을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반도체"를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및 반도체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3.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반도체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반도체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반도체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40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반도체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을 각각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술 또는 반도체기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반도체기술과 관련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기술사업화시설"로 한다.

3) 반도체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반도체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3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5(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 제3조(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반도체기술 관련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034년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 12월 31일까지-----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을-----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2. -----<u>인공지능</u>,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클라우드컴퓨팅-----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 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 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 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가.・나. (생략)

<신 설>

 가 ·나 (혀해과 간은)

3.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
하 "반도체기술"이라 한다)을
언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반도체기술연구
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반
도체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
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
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다만,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u>경우: 100분의 50</u>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40
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에서 반도체기술연구개
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u>00분의 10으로 한다)</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u>
제1호부터 제3호까지

<u>액</u>

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 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 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 는 금액

가. • 나. (생 략)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생략)
-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 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 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 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 分經理)하여야 한다.
- ⑤・⑥(생략)
 ⑤・⑥(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 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 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

가.・나.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4호</u>
<u>,</u>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u>신성장·원</u>
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
술연구개발비 및 반도체기술연
<u>구개발비</u>
,
⑤ · ⑥ (현행과 같음)

-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② (생 략)
-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 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 025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 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 략기술 관련 외국법인(내국법 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 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수 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 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대상외 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또 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 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 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1)
· ② (현행과 같음)
3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
술 또는 반도체기술
소재·부품·장비,
국가전략기술 또는 반도체기술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 · 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 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 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로 본다.

1. • 2. (생략)

④ ~ ⑧ (생 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1.・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세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제외하되, 반도체기술과
관련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 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 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

<u>20</u>
24년 12월 31일
 1. (현행과 같음)
1. (もも) を日) 2
 プト
,
 1) /코케키 키 ()
1) (현행과 같음) 2)

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 자하는 경우: 100분의 15 (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신 설>

나. (생 략)

- 3.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 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 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34년 12월 31일
3) 반도체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반
도체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34년 12월 31일
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
<u>의 25(중소기업은 100분의</u>
<u>35)에 상당하는 금액</u>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5)
<u>신성장사업화시설</u> , 국가
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기술사업화시설